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3. 1. 26.(목)~1. 30.(월)(5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개 회 식	본회의장
1. 26.(목) 10:00	본회의 (1차)	1.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1. 27.(금) 10:00	예결 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의원 회의실
1. 27.(금) 10:30	예결 특위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본회의장
1. 27.(금) 14:00	본회의 (2차)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의원 회의실
1. 27.(금) 14:30	예결 특위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의원 회의실
1. 30.(월) 10:00	본회의 (3차)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조례안 등 안건처리	본회의장 (토론 및 의결)

2023. 1. 26.(목)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18회 임시회 -



임현숙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이 되고자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부름을 받고 제가 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도 벌써 반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숨 고를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달려온 의정활동의 시제가 어느덧 제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루하루, 단 1분 1초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 임현숙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은, 바로 동두천시

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곧고 충실하게 쓰여야만 한다는 각오를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시민
의 편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이었습니다. 158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무려 2
백 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정말 안타까
웠던 이유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만 했었더라면 충분히 그 발생
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만 있었더라도 온 국민을 충
격과 슬픔에 빠뜨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냉

정하게 말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우리 동두천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동두천에서 개최되는 다중 밀집 행사는 연평균 30개 가까이 되며, 대부분의 행사들에 회당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자원봉사축제, 천사마라톤대회, 어린이한마당큰잔치, 소요단풍문화제, 락페스티벌,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등 굵직한 행사에는 최소 3천 명에서 많게는 2만5천 명까지도 군중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나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게 된 지난해 가을 이후로는,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다채로운 문화·예술·체육행사들이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막중한 의무를 되새기며 현재의

대비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예산을 지원받아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은 그 관리 책임 부서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은 통합된 체계적 시스템 아래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부서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형덕 시장님!

행정이 존재하고 기능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 개발과 시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등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제1 존재 이유는 바로 시민 안전입니다.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제317회 정례회에서 권영기 의원님 대표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는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포함됩니다. 각종 행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법적으로 보다 무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

인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
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2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임 현 숙

2023. 1. 26.(목)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18회 임시회 —



박인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디 2023년 올해는, 모든 분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동두천시민들이 2022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지방자치의 근원은 우리 동두천시의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023년,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서, 시민 감동 열정 의정을 함께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늘 고생이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동두천의 2023년이 달려 있습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앞장서 이끄는 여러분의 건강이 바로 동두천의 건강입니다. 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관주위보(貫珠爲寶)라고 했습니다. 구슬이 서 말 있다고 한들, 그 구슬들을 실로 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은 곧 좋은 제도나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 제도와 정책을 쓸모 있게 다듬고 운영하는 공무원의 노력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그것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만 원래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견제를 실질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서는, 이 좋은 제도가 그 취지에 걸맞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

부로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극히 형식적이고 답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의 경우 총 9건 적정사업 중 8건이 골목길 포장이었고, 13건 이첩사업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도로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였습니다. 2022년 적정사업 24건 중 84퍼센트인 20건이 골목길 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였고, 2023년 올해 적정사업 32건 중 75퍼센트인 24건이 역시나 골목길 포장과 보도블록 교체였습니다.

골목길 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 말고는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

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그 도입 취지입니다. 실생활 속 주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예산 수립과 집행에 도입하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본질이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편성 우수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완주시에서는 방과 후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카페 조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벽화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등갯길을 주민과 학생, 지역 작가들이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개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총 15회 312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들을 통한 공모사업 접수와 발굴이 73퍼센트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각 동별로 시기를 정해서 주민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참여 효과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제안으로 취합된 사업 아이디어들 중 2~3개에 대해 각 동 위원회에서 소요예산액과 기대효과들을 측정·검토한 후, 최종 1개 사업안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제안된 사업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안들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해 1, 2, 3위 그룹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하위 그룹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각 동 사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창의적이고 발전적

이며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박형덕 시장님의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시에서는 각 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뜻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벤치마킹 전학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며 독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동안 획일화되고 타성에 젖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 행복지수와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더 나

아가 이러한 방식으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시장님과 관제 공무원들의 각 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2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박인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1. .

제출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총계	589,463,207	576,516,207	12,947,000
일반회계	510,842,337	499,395,337	11,447,000
특별회계	78,620,870	77,120,870	1,500,00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입		세출	
구분	예산액	구분	예산액
계	510,842,337	계	510,842,337
· 지방세	55,100,000	· 일반공공행정	38,456,705
· 세외수입	14,538,541	· 공공질서 및 안전	3,488,788
· 지방교부세	117,269,000	· 교육	12,062,061
· 조정교부금 등	97,846,000	· 문화 및 관광	51,093,264
· 보조금	218,088,796	· 환경	26,947,048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0,000	· 사회복지	215,048,214
		· 보건	10,542,216
		· 농림해양수산	11,407,001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42,628
		· 교통 및 물류	27,390,284
		· 국토 및 지역개발	23,533,103
		· 예비비	26,775,594
		· 기타	61,755,431

○ 특별회계

계	78,620,870	천원
•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39,112,968	천원
•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30,834,515	천원
•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2,653,674	천원
• 주 차 장 사 업 특 별 회 계	1,230,689	천원
• 도 시 재 생 특 별 회 계	462,742	천원
•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특 별 회 계	2,050,043	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76,239	천원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동두천시 주민투표 조례」로 제명 변경, 목적 및 시의 책무를 개정
(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자격 명시(안 제3조)
- 다.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 등 명시(안 제4조~제10조)
-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운영 등,
심의회 간사, 심의회 운영세칙, 처리기간을 명시(안 제11조~제16조)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 넣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

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동두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신청 []필요없음		
변경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동두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동두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동두천시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33 -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붙임 1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

000(지자체명) 주민투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〇〇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〇〇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〇〇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

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 시도는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규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시도는 15일 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록을 소집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다만,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위원회에 역할 부여)

※ 예)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 주민투표 청구요건 심사 및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 등은 현행법상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제17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 ※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
- ※ 다만, 지역별 산업구조 및 생활 스타일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

제출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 출산 장려금 지원액 확대 및 분할지급 횟수 변경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 ‘조기 출산 후 전출입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및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장려금 지원액 확대 및 넷째아 이상 분할지급 횟수 변경(안 제4조)

현행	개정안
- 첫째아 : 50만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 넷째아 이상 :

500만 원(동 일) (지급횟수: 3회 분할 지급, 200만원/200만원/100만원)	500만 원(동 일) (지급횟수: 2회 분할 지급 200만원/300만원)
---	--

나. ‘조기 출산 후 전출입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안 제3조)

-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함.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 방지 규정을 추가

다.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안 제3조)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다문화가정이 산모의 모국으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을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신청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라.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부칙)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1.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동두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날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동두천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회”를 “2회”로, “출산장려금”을 “장려금”으로, “해와 그 다음 해 200만원, 3년”을 “해에 200만원, 1년”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를 “300만원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u> 1. <u>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동두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날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u>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제4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기준)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아 50만원.
2. 둘째아 100만원.
3. 셋째아 200만원.
4. 넷째아 이상 500만원. (이 경우 총 3회 분할 지급하되 출산 장려금 신청 한 해와 그 다음 해 200만원, 3년이 경과되는 해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동두천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기준) ① -----

1. ---- 100만원.
2. ---- 150만원.
3. ---- 250만원.
4. -----
 --- 2회 ----- 장려
금을 ----- 해에 200만원,
1년-----
 -- 300만원을 지급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현행조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7]

(일부개정) 2021.05.17 조례 제2193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입양된 1년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19. 10. 7.>
6. “돌 축하용품”이란 영아의 돌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19. 10. 7.>
7. “모자보건프로그램 유료품”이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자보건 프로그램 참여의욕을 고취하고자 제공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19. 10. 7.>

8. “출산축하용품 등”이란 “출산축하용품, 돌 축하용품,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을 말한다.<신설 2019. 10. 7.>

9.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신설 2019. 10. 7.>

제3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대상자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 등) 시에는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목개정 2019. 10. 7.]

제4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기준)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아 50만원.
2. 둘째아 100만원.
3. 셋째아 200만원.
4. 넷째아 이상 500만원. (이 경우 총 3회 분할 지급하되 출산장려금 신청 한 해와 그 다음 해 200만원, 3년이 경과되는 해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영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영아별로 각각 지원하고, 재혼가정 및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부로 증명되는 자녀로 출생순서를

인정하되 재혼가정은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된 자녀들만 합산하여 지원한다.

③ 넷째아 이상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7.]

제5조(장려금 지원신청 등)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자일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영아의 부모

2. 영아의 (외)조부모

③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입증서류(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0. 7.]

제6조(장려금 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2.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명단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명단을 전송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계좌 또는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장려금은 신청 한 다음달에 1회 지급하고, 분할 지급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 10. 7.]

제7조(장려금 대장)① 동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사항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접수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서울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0. 7.]

제8조(장려금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영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지원대상자와 영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한 경우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7.]

제9조(출산축하용품 등 지원)①시장은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생아 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및 돌 축하카드
2. 출산축하용품
3. 돌 축하용품
4.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5.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출산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2. 돌 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출산일로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동안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3.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지원대상자: 모자보건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 등의 신청은 출생일 및 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여부

⑤ 보건소장은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 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출산축하용품 등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단, 출산축하용품 등 출납대장은 「[전자정부법](#)」 제2호에 따라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⑥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출산축하용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7.]

제10조(산후조리비)① 산후조리비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21. 5. 17.>

- ②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경비를 출생아 1인당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③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④ 동장은 산후조리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및 지원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산후조리비를 환수한 경우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및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7.]

제11조(그 밖의 지원)시장은 출산장려·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40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액 확대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산장려금 지원액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 (동일) (지급횟수 : 3회 분할 지급, 200만원/200만원/100만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 (동일) (지급횟수 : 2회 분할 지급 200만원/300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	-	-	-	-	-
세출	529,000	534,000	539,000	544,000	549,000	2,69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구분	지급인원	소요예산	산출근거
합 계		2,695,000	
2023년	386명	529,000	· 첫째아 100만 원 × 197명 = 197백만 원 · 둘째아 150만 원 × 118명 = 177백만 원 · 셋째아 250만 원 × 32명 = 80백만 원 · 넷째아 200만 원 × 21명 + 100만 원 × 3명 + 200만 원 × 15명(신규출생아) = 75백만 원
2024년	391명	534,000	연 신규 출생아 5명 증가 반영
2025년	396명	539,000	"
2026년	401명	544,000	"
2027년	406명	549,000	"

5. 재원조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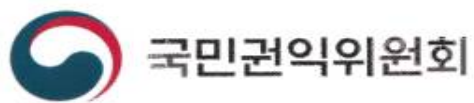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연도\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국 비						
도 비						
시비						
소 계	529,000	534,000	539,000	544,000	549,000	2,695,000
일반회계	529,000	534,000	539,000	544,000	549,000	2,695,000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계	529,000	534,000	539,000	544,000	549,000	2,695,000

6. 작성자(부서) 의견 : 의견 없음

7. 작성자 :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의 결



ACR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42호

의 안 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2. 12. 5.

주 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5일

위 원 안 성 옥

위 원 김 태 규

위 원 김 기 표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흥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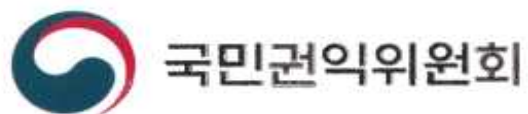


[별 지]

보다나온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 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

2022. 12.



ACRC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출산지원금

[지자체]

가 조기 출산 후 전출입 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문제점】

□ 조기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① 관내에서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②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하고, ③ 신청일 현재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규정
 - (예시) 부 또는 모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지급. 다만,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을 거주한 이후 지급
- 이에 전입신고 후 출산한 경우에는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으로 기존 지자체에서 출산한 후 이사하면 어떤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전출 지자체) 관내 거주 중에 출산했다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여 전입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불가 (②, ③ 미충족)
 - (전입 지자체) 전입 이후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출산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으로 전출지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여 지급 불가 (①, ② 미충족)
 - * 출산일부터 전입한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나, 출산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미거주

권익위 실태조사('22. 4월)

- 새로이 이사 온 주민이 조산으로 인해 전입하기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을 경우, 규정상 '신청지 출산 및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지자체는 207개 중 약 59%(122개)

< 주요 민원 사례 >

- 이사를 한 뒤 해당 지역에서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이사 전 기존 거주지에서 아이를 낳았고, 며칠 뒤 계획대로 이사 후 새로이 이사한 지역에 전입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는데, 기존 거주지에서는 출생신고를 그 지자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이 이사한 지자체에서는 출산할 당시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함 (국민신문고, '21. 12월)
- 이사를 위해 부동산 계약을 사전에 완료했고, 예정일대로라면 이사 완료 후 이사한 지역에서 출산하려 하였으나, **조기 출산**하였고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과 병원·산후조리** 등으로 출산일 당시 기존 거주지에서 출생신고를 못했으며 이사 및 전입 신고를 한 후 이사한 지역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사한 지자체에서는 출생일 당시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원 (국민신문고, '21. 1월)
-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이사하여 거주할 계획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조산**기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이사 일정을 부득이 연기**하여(이후 이사를 하고, 이사한 지역에 출생신고) 출산일 당시에 이사한 지자체에 거주지를 둘 수 없었던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구 (국민신문고, '21. 10월)

【개선방안】

-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 전입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 시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 지급
 -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 중복지급 방지 규정 추가 가능
- ※ 확인 방법(예시): 전입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동산 계약서 등을 통해,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전입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변경]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경기 동두천시

검토결과	협의완료
검토의견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다만, 복지부 주관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및 ‘영아수당’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재정상황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청사 부지 추가 확보(회계과) : 취득
-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관광휴양과) : 취득

	2023년도 수시 제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분	취득면적	취득금액	취득시기	부서명
계	토지 11필지, 건물 1동 (10,590.61㎡, 6,942백만 원)				
시청사 부지 추가 확보	토지	3,513㎡	4,042백만 원	2023. 2.	회계과 (재산관리팀)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	토지	6,406.8㎡	2,900백만 원	2023. 2.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
	건물	670.81㎡	0		

□ 시청사 부지 추가 확보 : 회계과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동두천시청사 부지(생연동 438번지 외)
- 사업기간 : 2022. 12.~2023. 5.
- 취득대상 토지현황 : 생연동 437-5 외 7필지(답, 대 3,513m²)
- 사 업 비 : 4,300백만 원(전액 시비)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후화 및 포화 상태인 청사구역(주차, 업무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청사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등으로 활용

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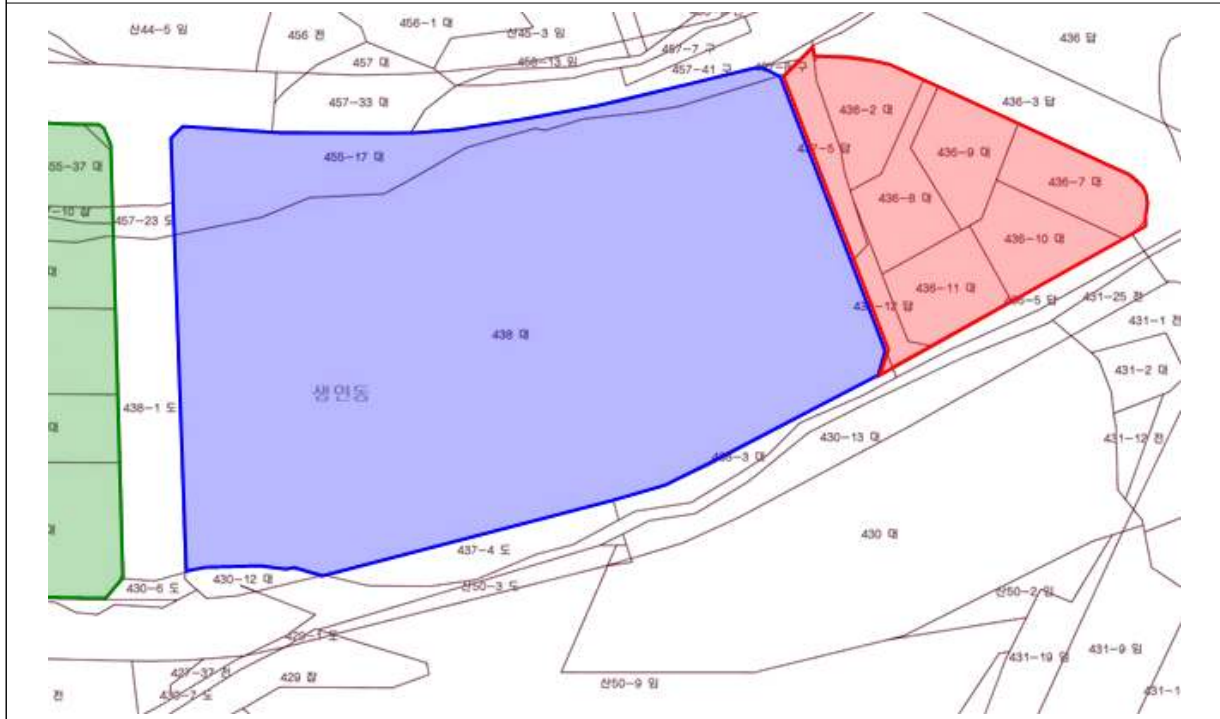
1) 취득대상 재산

(단위: m², 백만 원)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금액	취득사유	비고
계		토지 8필지	3,513	4,042		
1	토지	생연동 437-5 외 7필지	3,513	4,042	시청사 부지 추가 확보	

라.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생연동 437-5 외 7필지)



현황사진



□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 (관광휴양과)

가. 사업개요

- 매입부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8, 8-13, 8-15번지
- 사업규모 : 토지 6,406.8㎡, 건물 670.81㎡
- 사 업 비 : 2,900백만 원(전액 시비)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당부지는 소요유원지 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학교법인 신흥학원 소유로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3자(품바공연)가 무상임차로 사용중에 있음.
- 소요산관광지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관광지이나, 관광지와 유원지 내 기반 및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함.
- 현재 소요유원지 인근에 추진중에 있는 소요산확대개발 사업과 더불어 종합적인 소요산 발전 계획을 위해서는 해당부지의 매입이 반드시 필요함.

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1) 취득대상 재산

(단위: m², 백만 원)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금액	취득사유	비고
계		토지 3필지	6,406.8	2,900		
		건물 1동	670.81	0		
1	토지	상봉암동 8 외 2필지	6,406.8	2,900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	
	건물	상봉암동 8	670.81	0		

라.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상봉암동 8 외 2필지)	현황사진
	

2023년도 관리계획서(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 원)

구 분			당초(취득·처분)			변경(취득·처분)			증감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2	3,488	7,117	4	13,407.8	14,059	2	9,919.8	6,942	
		건물	3	4,204	16,600	4	4,874.81	16,600	1	670.81	-	
		기타										
	1.매 입	토지	2	3,488	7,117	4	13,407.8	14,059	2	9,919.8	6,942	협의 취득
		건물				1	670.81	-	1	670.81	-	경제적가치회 박
		기타										
	2.교 환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3	4,204	16,600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 환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기 타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 원)

번호	재 산 표 시			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토지	4건(13필지)	13,407.8	14,059			
	건물	4동	4,874.81	16,600			
1	토지	생연동 511-1	2,146	4,363	2023년 상반기	노인회관 건립 (사회복지과)	정기분
	건물	생연동 511-1	1,188	4,748	2024. 12.		
2	토지	보산동 405-3	1,342	2,754	2023년 상반기	장애인회관 건립 (사회복지과)	정기분
	건물	보산동 405-3	1,188	4,752	2024. 12.		
3	건물	생연동 438	1,828	7,100	2025. 7.	시청사 제3별관 증축 (회계과)	정기분
4	토지	생연동 436-12 외 7필지	3,513	4,042	2023. 2.	시청사부지 추가 확보 (회계과)	금회분
5	토지	상봉암동 8, 8-13, 8-15	6,406.8	2,900	2023. 2.	소요유원지 내 토지매입 (관광휴양과)	금회분
	건물	상봉암동 8	670.81	0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번호	재 산 표 시			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해	당	없	음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 4. 2.)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문구 삭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정사항 반영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을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을 “법 제60조에 따라”으로 한다.

1. “특정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를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	<u>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 제2조(정의) ----- -----. 1. “특정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차를 말한다.

<신 설>

2. (생 략)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
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
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
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
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
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
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
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
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 장치로서 「대
기환경보전법」 -----
----- 제60조 -----

-----.

5. -----

----- 법 제60조에 따라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
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이하 “의무대
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
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
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
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
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
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생

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
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
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② -----

-----.

1. -----

----- 자동차 및 건
설기계

2. -----

-----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삭 제>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현행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 제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

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
기 ---.

<삭 제>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

----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② -----
-----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

도가 100분의 10이하이거나 저
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
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인 차량
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
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
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2019.02.01 조례 제2037호

(전부개정) 2019.08.01 조례 제20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9.8.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8.1.>

1. 삭제<2019.8.1.>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저공해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9.8.1.>

제3장 보 칙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 2. 1.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 26.

다. 상정일자 :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두천시 주민투표 조례」로 제명 변경, 목적 및 시의 책무를 개정
(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자격 명시(안 제3조)
-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 등 명시(안 제4조~제10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운영 등, 심의회 간사, 심의회 운영세칙, 처리기간을 명시(안 제11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본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

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다만, 주민 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기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오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 26.

다. 상정일자 :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출산 장려금 지원액 확대 및 분할지급 횟수 변경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키와 관련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조기 출산 후 전출입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및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관련 내용 삭제
 - 안 제1조,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 안 제5장 제목 및 제20조
- 장려금 지원액 확대 및 넷째아 이상 분할지급 횟수 변경(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동일) (지급횟수: 3회 분할 지급, 200만원/200만원/100만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동일) (지급횟수: 2회 분할 지급 200만원/300만원)

- ‘조기 출산 후 전출입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안 제3조)
 -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함.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 방지 규정을 추가
-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안 제3조)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다문화가정이 산모의 모국으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을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신청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출산장려금의 지원 확대, 조기 출산 후 전출입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을 개선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동두천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 되오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 26.

다. 상정일자 :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청사 부지 추가 확보(회계과) : 취득
-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관광휴양과) : 취득

	2023년도 수시 제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분	취득면적	취득금액	취득 시기	부서명
계	토지 11필지, 건물 1동 (10,590.61㎡, 6,942백만 원)				
시청사 부지 추가 확보	토지	3,513㎡	4,042백만 원	2023. 2.	회계과 (재산관 리팀)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	토지	6,406.8㎡	2,900백만 원	2023. 2.	관광휴양 과 (관광정 책팀)
	건물	670.81㎡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첫째, 시청사 부지 추가확보의 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둘째,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소요산확대개발 사업

과 더불어 유원지 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대 등 종합적인 소요산 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 26.

다. 상정일자 :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 4. 2.)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문구 삭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정사항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배출가스 4등급 차

량과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예산안 현황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구성비	2023년 본예산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 률
총 계		589,463	100.00%	576,516	100.00%	12,947	2.25%
일 반 회 계		510,842	86.66%	499,395	86.62%	11,447	2.29%
특 별 회 계		78,621	13.34%	77,121	13.38%	1,500	1.94%
	공 기 업 특 별 회 계	69,948	11.87%	68,448	11.87%	1,500	2.1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113	6.64%	39,113	6.78%	0	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835	5.23%	29,335	5.09%	1,500	5.11%
	기 타 특 별 회 계	8,673	1.47%	8,673	1.50%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53	0.45%	2,653	0.46%	0	0.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31	0.21%	1,231	0.21%	0	0.00%
	도시재생특별회계	463	0.08%	463	0.08%	0	0.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50	0.35%	2,050	0.36%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276	0.39%	2,276	0.39%	0	0.0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제1회 추경예산(안)		2023년 당초예 산	증(△)감	비 고
	예산액	구성 비			
세 입 계(A)	510,842	100 %	499,395	11,447	
지 방 세	55,100	10.8 %	55,100	0	
세 외 수 입	14,538	2.8%	14,538	0	
지방 교부세	117,269	23.0 %	111,700	5,569	○보통교부세 938억원(38억원 증) ○특별교부세 18억원 -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3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보행로 조성 8억원 -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3억원 - 스마트 폭염 저감시설 설치 3억원 - 재정분석 및 적극행정 인센티브 1억원
조정교부금등	97,846	19.2 %	92,046	5,800	○ 특별조정교부금 58억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6억원 -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14억원 -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CCTV 확충) 8억원 - 안흥(1구간) 소하천 정비 10억원 -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 7억원 - 탑동 및 왕방 터널 환경개선 8억원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5 억원
보 조 금	218,089	42.7 %	218,011	78	
국고보조금등	160,169	31.4 %	160,169	0	
도비보조금	57,920	11.3 %	57,842	78	○ 한파대책비 78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00	1.6%	8,000	0	
순세계잉여금 등	8,000	1.6%	8,000	0	
세 출 계(B)	510,842	100 %	499,395	11,447	
법정필수경비 등	72,677	14.2 %	72,677	0	
행정운영경비	61,755	12.1 %	61,755	0	
인력운영 비	60,393	11.8 %	60,393	0	
기본경비	1,362	0.3%	1,362	0	

재 무 활 동		10,922	2.1%	10,922	0	
	내부거래지출	10,898	2.1%	10,898	0	
	보전지출	24	0.0%	24	0	
정책사업 투자비용		411,390	80.5%	399,943	11,447	
	보조사업비	289,992	56.8%	289,214	778	
	국도비보조금	217,359	42.5%	217,281	78	
	자체부담금	72,633	14.2%	71,933	700	
	자체사업비	121,398	23.8%	110,729	10,669	○시청사 활용부지 매입 43억원 ○소요유원지내토지매입 29억원
예 비 비		26,775	5.2%	26,775	0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 26.

다. 상정차수 : 제1차 본회의 상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상정(부서별 예산안 설명, 심사
및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서 채택)

제3차 본회의 상정 및 의결

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총 예산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5,894억 6천 3백 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2.25% 증가한 129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2.29%가 증가한 5,108억 4천 2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4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94%가 증가한 786억 2천 1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세입 예산분야

일반회계 세입은 114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 : 변동 없음

○ 세 외 수 입 : 변동 없음

- 지방교부세 : 4.99% 증가한 1,172억 6천 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등 : 6.3% 증가한 978억 4천 6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보조금 : 0.04% 증가한 2,180억 8천 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0.13% 증가한 579억 1천 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변동 없음

특별회계 세입은

- 공기업 특별회계 : 2.19% 증가한 699억 4천 8백 만원으로 본예산 대비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 : 변동 없음
- 상기와 같이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며, 기타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서명	기정액	조정산출근거	조정액	증감
계			102,947,000	12,947,000
보통교부세	90,000,000	○보통교부세	93,769,000	3,769,000
특별교부세	0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기획감사담당관)	90,000	90,000
	0	○적극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기획감사담당관)	10,000	10,000
	0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 개선(사회복지과)	300,000	300,000
	0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안전총괄과)	300,000	300,000

	0	○스마트 폭염 저감시설 설치(안전총괄과)	60,000	60,000
	0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교통행정과)	240,000	240,000
	0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보행로 조성(교통행정과)	800,000	800,000
조정교부금	0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사회복지과)	600,000	600,000
	0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문화체육과)	1,400,000	1,400,000
	0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지능형 CCTV 시스템 확충)(정보통신과)	800,000	800,000
	0	○안흥(1구간) 소하천 정비(안전총괄과)	1,000,000	1,000,000
	0	○원도심 활성화-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700,000	700,000
	0	○탑동 및 왕방 터널 환경개선(도로과)	800,000	800,000
	0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투자개발과)	500,000	500,000
보조금	0	○한파대책비(성립전)	78,000	78,000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0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1,000,000	1,000,000
	0	○하수처리시설 개선	500,000	500,000

다. 세출 예산분야

- 본청 전체부서에서 2.25% 증가한 5,894억 6천 3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9억 4천 7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직별 세출 증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서명	조정산출근거	기정액 (총괄)	경정조정액	조정액 (증감)
계		20,157,732	33,104,732	12,947,000
사회복지과	○냉난방기 교체(40대)(재원변경)	434,000	434,000	0
사회복지과	○확대피해아동쉼터 설치(1개소)	0	600,000	600,000
회계과	○시정사 활용부지 매입	0	4,300,000	4,300,000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재원변경)	965,000	1,400,000	435,000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재원변경)	550,000	550,000	0
관광휴양과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	0	2,910,000	2,910,000
정보통신과	○노후카메라 교체	180,000	280,000	100,000
정보통신과	○방범용CCTV 확대설치 등	220,000	550,000	330,000
안전총괄과	○안흥(1구간) 소화전 정비	0	1,000,000	1,000,000
안전총괄과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0	300,000	300,000
안전총괄과	○한파 취약계층 방한물품(담요) 지원(성립전)	0	78,000	78,000
안전총괄과	○스마트 폭염 저감시설 설치	0	60,000	60,000
교통행정과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0	240,000	240,000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보행로 조성	0	800,000	800,000
교통행정과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재원변경)	915,000	915,000	0
도로과	○탐동터널 UPS 배터리 교체 및 보수 공사(재원변경)	35,000	35,000	0
도로과	○탐동터널 터널등 수밀형 접촉재 교체 공사(재원변경)	44,000	54,000	10,000
도로과	○탐동터널 전기실 시스템 냉방기 설치(2대)(재원변경)	11,000	13,000	2,000
도로과	○탐동터널 비상방송 스피커설비 교체(29대)	0	110,000	110,000
도로과	○왕방터널 UPS 배터리 교체 및 보수(131개)(재원변경)	167,000	192,000	25,000
도로과	○왕방터널 터널등 수밀형 접촉재 교체(3,994개)(재원변경)	221,000	241,000	20,000
도로과	○왕방터널 전기실 시스템 냉방기 설치(4대)(재원변경)	28,000	35,000	7,000
도로과	○왕방터널 비상방송 스피커설비 교체(32대)	0	120,000	120,000
투자개발과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재원변경)	3,810,732	3,810,732	0
환경사업소	○1, 2단계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재원변경)	600,000	600,000	0
환경사업소	○1, 2단계 침사지 제진기 교체(재원변경)	600,000	600,000	0
환경사업소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재원변경)	1,136,000	1,568,000	432,000
환경사업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241,000	11,309,000	1,068,000

라. 종합의견

세입은 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시청사 활용부지 매입과 소요유원지 내 토지 매입, 안흥(1구간) 소하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보행로 조성 등 공공행정 분야와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분야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각 교부금의 용도에 맞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일부는 사업비 변동 없이 자원만을 적정하게 변경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